

다문화가정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(2018-1학기)

1. 대 상 : 부·모중 한분이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,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이며 직전학기 2.5이상(F포함)인 자 (직전학기 교환학생 또는 휴학자의 경우 이전 활용가능한 성적 적용)

※ 다문화가정장학금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부터 변경될 수 있습니다.(확정시 추후 공지 예정)

2. 장학금액 : 80만원 (단,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에서 비율로 조정하여 지급함)
3. 신청기간 : 2018.04.17.(화) ~ 05.04(금) 15:00 (기간내 종합정보서비스 상시 신청 가능)
4. 신청방법 :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매뉴얼 참조
 - 1) 종합정보서비스(신청-기타)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스캔 첨부(제출서류 첨부시 파일 1개만 첨부 가능, PDF파일 1개로 스캔첨부를 권장하며, 여러 사진파일 첨부시에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요망)
 - 2) 신청기간내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(스캔 첨부)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서류미비로 탈락처리 됨.

5. 제출서류

- 1) 다문화가정장학금 신청서 1부(온라인신청으로 대체)
- 2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) 1부
- 3) 신규자만 제출 - 다문화가정 증빙서류(국적취득사실증명서) 1부

6. 지급시기 : 2018년05월23일(수) 예정(정확한 일정은 추후 장학대출공지사항 참고 요망)

7. 안내사항

- 1) 2018-1학기 현재 휴학자, 수료자, 초과학기자중 학점등록자 신청 불가
- 2) 타장학금 수혜로 인하여 등록금 범위 초과시 등록금 범위내에서 잔여금액에 맞추어 장학금액이 조정·지급됨.
- 3)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하여 등록한 경우 본 장학금 수혜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원금상환하여야 함. 미상환시 이중수혜자로 분류되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불가함.
- 4)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(04월09일)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
※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발급 : 민원24(www.minwon.go.kr), 대법원(www.efamily.scourt.go.kr)